익산역 유블레스 퍼스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모집공고

UBLESS 익산역 유블레스 퍼스트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에 의해 발생하는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청 [주택과–29512호(2021.06.03.)]로 건축물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익산시 2019–주택과–신축허가–63호) (2019.05.31) ■ 분양사업자(수탁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위탁자 : (주)미래종건 / 시공사 : ㈜유탑건설 / 분양대행사 : 서우글로벌(주)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1가 217번지 외 1필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해당사항 없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지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대지면적 : 3,738.90㎡[3,738.90㎡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대지지분 401.46㎡,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 68.78㎡] ■ 건축물 연면적 : 40,088.1744㎡ (오피스텔 : 4,376.8496㎡, 근린생활시설 : 636.8090㎡) ■ 건축물 용도: 아파트(아파트) / 업무시설(오피스텔) /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2층 ~ 지상 3층	계단실,주차장	지상 5층 ~ 8층	아파트, 오피스텔
지상 4층	계단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근린시설	지상 9층 ~ 27층	아파트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7층 1개동 중 오피스텔 24실, 근린생활시설 2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기준에 따른 내진능력은 Ⅶ–169g 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오피스텔]

(단위 :㎡, 원, VAT포함)

용도	TYPE	세대수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합계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합계
오피스텔	79A	8	79.8625	44.4146	57.9905	182.2676	16.7098	64,800,000	223,200,000	22,320,000	310,320,000
	79B	8	79.9875	44.3507	58.0811	182.4193	16.7360	64,800,000	223,200,000	22,320,000	310,320,000
	79C	8	79.9875	44.3507	58.0811	182.4193	16.7360	64,800,000	223,200,000	22,320,000	310,320,000

[근린생활시설]

(단위 :㎡, 원, VAT포함)

용도	TYPE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합계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합계
근린생활시설	134	134.6625	29.6148	96.5744	260.8517	28.1758	177,750,000	612,250,000	61,225,000	851,225,000
	194	194.0850	42.6828	139.1895	375.9573	40.6089	256,500,000	883,500,000	88,350,000	1,228,350,000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호실별 대지지분은 각 호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내부선(안목치수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부대복리시설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기/기계실, 방재실, MDF실, 피난안전구역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호실별 공용면적은 본 오피스텔 전체의 공용면적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호실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분양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 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 0.3025 / 형별면적 (㎡)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오피스텔]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계 약 금 (10%)		중도금 1회(10%)	중도금 2회(10%)	중도금 3회(10%)	중도금 4회(10%)	중도금 5회(10%)	잔 금 (40%)
TYPE	계약시	계약 후 15일 이내	21.09.30	22.02.28	22.07.29	22.12.30	23.05.31	(입주시)
79A	10,000,000	2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124,128,000
79B	10,000,000	2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124,128,000
79C	10,000,000	2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31,032,000	124,128,000

[근린생활시설]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계 약 금 (10%)		중도금 1회(10%)	중도금 2회(10%)	중도금 3회(10%)	중도금 4회(10%)	잔 금 (50%)
TYPE	계약시	계약 후 15일 이내	21.10.29	22.04.29	22.10.31	23.04.28	합계
134	10,000,000	75,122,500	85,122,500	85,122,500	85,122,500	85,122,500	425,612,500
194	10,000,000	112,835,000	122,835,000	122,835,000	122,835,000	122,835,000	614,175,000

▣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부대복리시설등 공용부분(헬스장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분양면적에 포함되므로, 향후 시설 이용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른다.)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시 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 각 실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내부선(안목치수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 신청 시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 기간이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건물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대지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매,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 교통, 지하철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분양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10.)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청약접수 방법은 분양사무실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1인당 타입별 1개 호실까지 청약 가능하며, 당 사업지는 1인당 최대 1개 호실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타입에 2개 호실 이상 중복신청하거나, 2개 호실을 초과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층 · 호수는 분양사무실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신청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일정

구분	청약신청	추첨 및 당첨자발표	분양계약 체결일
일정	2021.06.15.(화)	2021.06.22.(화)	2021.07.05.(월) ~ 2021.07.07.(수)
일시	10:00–18:00	13:00	10:00–16:00
장소	당사 분양사무실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868)		

■ 청약 신청금 납부방법

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신청금 납부계좌번호	예금주
1,000만원	신청계좌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41501–01–454943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무통장 입금시 신청 타입 및 신청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79A을 신청한 홍길동 → 79A홍길동) ※ 신청자와 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금을 무통장 입금하신 분도 필히 분양사무실에 입금증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적격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분양사무소, 시공사 및 제3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입금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청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21.06.22.(화요일) 13:00 이후 • 추첨: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호실별로 공개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 등을 통하여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방법 : 당첨자 발표 이후 아래의 환불기간에 분양신청시 제출 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2021.06.22.)로부터 10 영업일 (2021.07.02.) 이내 • 청약시 환불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개인	• 청약신청서(분양사무실 비치) • 청약금 납입 영수증(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청약신청금 환불용 통장 사본(청약신청인 명의) • 본인도장(또는 서명)
법인	• 청약신청서(분양사무실 비치) • 청약금 납입 영수증(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청약신청금 환불용 통장 사본(청약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배우자 신분증 및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의 영향, 사생활이나 일조, 조망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계약체결장소
2021.07.05.(월) ~ 2021.07.07.(수) (10:00 – 16:00)	당사 분양사무실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868)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 임의로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개인	• 청약신청접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및 입금확인서
법인	• 청약신청접수증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확인서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 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분양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납부 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441501–01–454943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분양대금 납부 지정계좌로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입금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예 : "79A" 당첨자 홍길동" → 79A홍길동) • 상기 분양금액에는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 · 잔금 납부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납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계약서에 표시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 알선을 진행할 수 있으나, 알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실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2020.02.21. 시행)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시행수탁자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중도금 대출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대출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계약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며,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시행위탁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총 분양가격의 50%범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총 분양가격의 40%범위 내 대출을 알선합니다. (단, 정부의 정책 및 금융권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매도인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알선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매도인 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신청 여부는 입주자(계약자)의 선택사항이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제한 등)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수탁자 및 위탁자)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사업주체(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불가시 직접 현금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안내사항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 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 될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해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 될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이후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실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하자(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사용승인)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입주개시일 1개월 전)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오피스텔 한정)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미래종건,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 한도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미래종건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분양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계약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함에 관한 신탁해제나 해지 포함)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과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매도인)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매수인(분양자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 및 시공사인 (주)유탑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시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주)유탑건설의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상 하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책임으로 한정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인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써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 대출금의 상환(지급), 중도금대출이자의 지급(대납)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각종 홍보,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실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의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필히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오피스텔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 또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분양 사무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입주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합니다.

▣ 추가선택 품목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비고
79Type (A,B,C)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1 (2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3,700,000	370,000	1,850,000	1,480,000	
		선택1 (3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 침실2	4,800,000	480,000	2,400,000	1,920,000	
		선택1 (4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000,000	600,000	3,000,000	2,400,000	

* 시스템 에어컨 모델명

구분	Type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실외기
모델명 (삼성1way, 무풍 시스템에어컨)	79Type (A,B,C)	AJ060MB1PBC1	AJ020MB1PBC1	AJ020MB1PBC1	AJ020MB1PBC1	AJ025MXHNBC1 (선택1) AJ030MXHNBC1 (선택2) AJ040MXHNBC1 (선택3)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벽면 매립형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각 실별 부하를 기준하여 적용 되었으며 적용실의 면적변경 또는 추가 별열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냉방능력 부족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고급 현관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79Type (A,B,C)	현관 중문 설치	3연동 도어	AL 프레임 + 브론즈 유리	1,200,000	120,000	600,000	480,000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유의사항 – 현관중문 설치에 따라 현관수납장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급 현관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시공됩니다.

(3) 비스포크 (냉장+냉동+김치냉장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모델명	형식				
79Type (A,B,C)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냉동,김치)	RR39T7695AP (냉장) RZ32T7665AP (냉동) RQ32T7645AP (김치)	판넬 Cotta 3EA	4,200,000	420,000	2,100,000	1,680,000
			판넬 Cotta 1EA, Satin/Glam 2EA	4,500,000	450,000	2,250,000	1,800,000
			판넬 Satin/Glam 3EA	4,650,000	465,000	2,325,000	1,860,000

※ 비스포크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가구장만 시공됩니다.

(4)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50%) (22.09.30)	잔금 (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79Type (A,B,C)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삼성전자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NZ63T5601AK	800,000	80,000	400,000	320,000

※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가스쿡탑(Haatz SSGC–3605SABH)이 시공됩니다.

(5) 붙박이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50%) (22.09.30)	잔금 (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79Type (A,B,C)	안방 프리미엄 붙박이장 설치	붙박이장	붙박이장 (TV수납장)	1,800,000	180,000	900,000	720,000

※ 붙박이장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벽지마감으로 시공됩니다.

(6) 바닥 타일 마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50%) (22.09.30)	잔금 (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79Type (A,B,C)	바닥 포세린 타일 마감 업그레이드 (거실+주방+복도)	바닥타일	포세린타일 (600*600)	750,000	75,000	375,000	300,000

※ 바닥 타일 마감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7) 아트월/복도 벽 마감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50%) (22.09.30)	잔금 (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79Type (A,B,C)	아트월 벽 마감 업그레이드	아트월 벽타일	포세린타일 (600*1200)	230,000	23,000	115,000	92,000

※ 아트월/복도 벽 마감 업그레이드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트월 기본벽타일(포세린타일,400*800)이 시공됩니다.

(8) 주방 상판 + 벽 마감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50%) (22.09.30)	잔금 (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79Type (A,B,C)	주방상판 + 벽엔지니어드스톤 마감 업그레이드	엔지니어드스톤	롯데 래디언스 프리미엄급 (헤일로)	1,700,000	170,000	850,000	680,000

※ 주방 상판 + 벽 마감 업그레이드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MMA 인조대리석 + 주방 벽타일(도기질타일, 300*600)이 시공됩니다.

(9) 음식물 분쇄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공급형(㎡)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50%) (22.09.30)	잔금 (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79Type (A,B,C)	음식물 분쇄기	가정용 일반	HY–1004	1,000,000	100,000	500,000	400,000
		가정용 고급	HY–650	1,350,000	135,000	675,000	540,000

※ 음식물 분쇄기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 선택품목	국민은행	441501–01–458363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입금시 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호 홍길동 → 101홍길동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주차장, 놀이터, 휴게공간 등을 함께 사용하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분양면적에 포함되므로, 향후 시설 이용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의 위탁자는 ㈜미래종건, 시공사는 ㈜유탑건설, 수탁자는 한국투자부동산(주), 분양대행사는 ㈜서우글로벌입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헬스장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분양면적에 포함되므로, 향후 시설 이용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본 오피스텔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 전력으로 전기요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현장여건과 오기 및 구조/성능/상품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법 및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외부색채, 옥상조형물, 공개공지, 옥상정원, 경관조명 및 기타 계획 및 재료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 시공 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행수탁자가 분양 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는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9의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하오니 분양사무실 내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외부에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공지, 조경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는 일부 잔디, 식재, 시설물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협의 및 승인 없이 훼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할 수 없고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외부인의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재료의 동등 수준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입주(점)자가 공동으로 부담 하여야하고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통신시설 신규 가입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지내 공개공지 및 조경물은 사용승인 후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입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도로 및 단지 사이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근접한 일부 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본 공사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실과 건축허가도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 후 현장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 성능, 상품 등의 개선 및 구조/토목 Value Engineering를 통한 공사최적화를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또는 시공사는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포장, 주변환경,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변경)허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며,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주차장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협의 및 규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배분된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별도로 구획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협의회 및 상가자치관리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기둥 및 벽,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 시 불편할 수 있고, 주차 및 출입가능 높이, 구역, 화물차 반입/하역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은 1종기계환기(강제 급,배기)이며 관계법령 또는 준공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욕실은 강제배기)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자재의 내용 및 기둥의 유무, 크기 등은 형별,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여건(주변의 기존 건축물, 인근 시설물, 사업지 주변 신축공사)의 변화 및 내부여건(해당호수의 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 · 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제반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등 인 · 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호 · 실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개발계획, 건축허가 및 심의(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 · 주차장 ·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각호실별로 에너지효율을 위하여 폐열회수장치인 전열교환 환기유니트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일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위치 등)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배관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 외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분양사무실 및 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분양사무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등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 오피스텔 경계벽은 콘크리트벽체, 조적벽체,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 · 실 내에는 건물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호 · 실 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월패드 위치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 진출입,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천정고는 설비 및 기타사항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외부 창호,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단위호(실)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이 폭 · 높이 등의 협소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건물 내 공유시설물에 대한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자 부대시설에 제공되는 시설물과 내부 마감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인 동 호수 지정 시 동일타입이나 분양사무실에서 고지한 내용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공용시설물 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실에는 소방관련법령에 의거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오피스텔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자전거 보관소 등 주민편의시설은 관리단 등의 구성 이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 본 건물의 1층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복도 및 1층 외부에는 보안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에 따라 공용부 및 전용부 일부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내 벽체(침실 문뒷편)에는 전기용 세대분전함, 통신용 단자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능상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로 인한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나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이 필요하고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벽체에 TV, 액자 등을 고정코져 못 등으로 고정하기전 전기 배선 및 에어컨 배관의 위치를 필히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기시공물의 훼손은 "을"이 보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실외기, 옥상 난간대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또는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LEV.홀 및 계단실, 복도 등은 소방법 기준에 의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실은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이나 공용부 천정, 벽체 등에는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규격이나 위치 등은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각종 배관, 팬코일 유니트, 각종 밸브 및 계기류, 기타 시설물 등의 점검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점검구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 주변건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은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공개공지, 옥상에 설치된 설비 시설물(실외기, 휀 등), 엘리베이터 운행 등에 의해 일부 호수는 소음, 진동 및 전파방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시설물 개수가 증감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도로, 학교 등)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분양사무실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호 · 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분양사무실 방문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여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일부 조정되어 설계변경 될 수 있고,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공간의 천장내부는 상, 하층 공용의 전용공간이므로 상부층의 입점자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 시 하부층은 가능토록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단위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 · 실내 에어컨 냉매배관 및 박스는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세대에 한해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본 분양공고 및 유의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광고 및 카탈로그, 분양 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련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발주처에 위임함,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 됩니다 •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각 호실에 배연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잔금대출은 계약자 본인이 금융권을 통해 대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신용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시는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입니다.

• 내진성능 관련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BC 2016)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진등급 1등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내진 시뮬레이션 내진능력은 Ⅶ–169g로 측정되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 광고할 사항

• 등록업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190082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인허가 기관 : 익산시 주택과

• 허가번호 : 2019년 05월 31일 건축허가 취득(익산시–주택과) • 공급대상물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217외 1필지 • 지목 : 대 • 건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분양규모 : 오피스텔 24실, 근린생활시설 2실 • 사업일정 : 착공일(21.03.09) / 입주예정일(23.11.30) • 소유권에 관한사항: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분양대금 관리자 및 분양사업자와의 관계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는 모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시행수탁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동일합니다.

■ 신탁회사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사업관계사 명칭

구 분	사업주체(매도인겸 수탁자)	시공사	위탁자	분양대행사
상 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유탑건설	㈜미래종건	㈜서우글로벌
법인 등록번호	110111–7125720	200111–0177365	214811–0020697	110111–6449410

■ 홈페이지 : http://is–ubless.com
■ 분양사무실 위치 :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868 [익산 유블레스 퍼스트 분양사무실]
■ 분양문의 : 063–724–0004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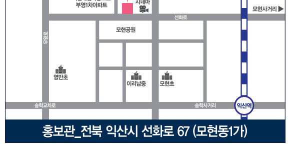

홍보관_전북 익산시 선화로 67 (모현동1가)

익산역 유블레스 퍼스트

아파트 202세대 / 오피스텔 24실
지하 2층~지상 27층 / 전용 67.48~207.55㎡

문의전화 063)724-0004

시행위탁자 : (주)미래종건 시공자 : 유탑건설 시행수탁자 : true friend 한국투자 부동산신탁